



제320회 임시회

2013.05.08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 광 희 의원 외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3년 04월 26일
- 회부일자 : 2013년 05월 01일

3. 제안이유

충북 도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하여 교원의 교육 활동과 지방공무원의 교육지원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(안 제13조, 신설)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 교원과의 불균형한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, 같은 직장 내 구성원간 형평성 있는 근무환경을 통하여 협력관계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
- 학교의 장이 학교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조정·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,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 간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효과적인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의 위임규정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, <표1>과 같이 현재 9개 타·시도에서 동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.

<표1>전국 시·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(교원과 근무시간 동일) 개정 현황

지역	조례 내용 발췌	개정일자
광주	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.<제13조>	2012.02.12.
강원	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.<제14조>	2012.03.30.
서울	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.<제13조의2>	2012.05.17.
인천	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.<제14조의2>	2012.06.11.
대구	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.<제12조의2>	2012.10.02.
경기	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.<제15조>	2012.10.05.
충남	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.<제14조>	2012.10.30.
전북	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.	2013.04.19.
전남	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.	2013.04.30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공무원법

[시행 2011. 8. 24] [법률 제10700호, 2011. 5. 23, 일부개정]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[시행 2011. 9. 29] [대통령령 제23165호, 2011. 9. 29. 타법개정]

제2조(근무시간 등)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,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정한다.

④ 「전자정부법」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(근무시간 등의 변경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.

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

[시행 2011. 8. 24] [대통령령 제23015호, 2011. 7. 4, 타법개정]

제9조(근무시간 등)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, 토요일은 휴무(休務)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④ 「전자정부법」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근무시간 등의 변경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소속 행정기관"이라 한다)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·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(이하 "유연근무"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,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·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, 유형,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